

대전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1045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피고, 피항소인 K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변론 종결 2020. 12. 3.

판결 선고 2021. 1. 21.

제 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206745 판결

환송전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나106690 판결

환 송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28669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0.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890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가. 항의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A'을 모두 'A'으로 고쳐 쓰며, '피고 주식회사 B' 또는 '피고 B'은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은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하고, 피고는 A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과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7. 11. 소외 은행에 18,717,478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 바, 그 중 미회수금 14,648,251원(= 제1신용보증대위변제금 잔액 4,853,815원 + 제2신용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9,160,439원 +

제1신용보증 확정손해금 350,491원 + 제2신용보증 확정손해금 65원 + 대지급금 319,441원)과 그 중 14,014,254원(= 제1신용보증 대위변제금잔액 4,853,815원 + 제2신용보증 대위변제금잔액 9,160,43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신탁 여부

피고가 2016.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위 신탁계약 당시 A에게 시가 117,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와 F조합에 대한 4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H 주식회사에 대한 1,400,000원의 대출금 채무, I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대한 52,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원고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에 해당한다.

3) 우선수익자 I의 선의 여부

가)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신탁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 사해신탁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수익자인 I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위 신탁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A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① I는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A과는 본 대출계약 외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다.

② I와 A 사이의 2016. 5. 16. 대출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압류, 가압류 등은 전혀 없었고, 근저당권자를 F조합, 채권최고액을 4,8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근저당권자를 G, 채권최고액을 6,75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위 대출계약은 A이 대출받은 돈으로 G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G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I가 위 대출계약 당시 고려한 이 사건 부동산상의 물적 부담은 F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뿐이었다. 실제로 A은 위 대출계약 체결 직후인 2016. 5.20. 위 대출금으로 G에 대한 피담보채무 49,230,000원을 모두 상환하고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③ 원고는 A의 신용보증사고가 2014. 7. 11. 발생하였음에도 그 정보를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인 2016. 7. 1.에야 등록하였는바, 이를 피고가 대출계약 당시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그 밖에 달리 I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에게 대출을 실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김혜령, 판사 박성수

[별지]

목 록

1등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동구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9.7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광주광역시 동구 대 278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78200분의 2708

- 이상 소유자(수탁자) 주식회사 -

- 광주지방법원 동기국 관할 -